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34
----------	-----------

제안연월일 : 2022년 4월 1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I. 수정이유

1. ○ 동 조례안 중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명칭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아닌 퇴직교직원들의 은퇴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 명칭을 교육봉사를 원하는 일반시민들도 포함하도록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로 함.
2. ○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실효성 및 저변확대와 퇴직교직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대상의 범위를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 조례안 중 “교육인생이모작”과 “퇴직교직원”을 “교육자원봉사활동”과 “교육자원봉사자”로 함.
- 3.

## II. 주요내용

4.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함(안 제명).
5. 나.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을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함(안 제1조).
6. 다. 교육자원봉사활동과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7. 라. 교육감의 책무 중 교육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필요 여건 조성을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여건 조성으로 함(안 제3조).
8. 마.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로 함(안 제4조).
9. 바. 센터의 기능을 퇴직교직원 중심에서 교육자원봉사자 및 그 활동 중심으로 변경함(안 제5조).
10. 사.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III.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퇴직교직원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재능기부와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교육인생이모작”을 “교육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인생이모작 사업”을 “교육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 제1호 중 “자원봉사 업무” 를 “교육자원봉사활동” 으로 하고, 제2호 중 “퇴직교직원” 을 “교육자원봉사자” 로 하며, 제3호 중 “퇴직교직원” 을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으로 하고, 제4호 중 “교육인생이모작” 을 “교육자원봉사활동” 으로 한다.

제7조 중 “교육인생이모작자문위원회” 를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로 한다.

제9조 중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를 “관련단체” 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u>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서울특별시교육청 <u>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퇴직교직원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재능기부와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서울교육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퇴직교직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타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타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퇴직교직원인 경우에는 서울시민에 한한다.</u></p> <p>2. <u>“교육인생이모작”이란 퇴직교직원들이 교육 자원봉사를 통해 퇴직 후에도 서울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2. <u>“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교육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교육자원봉사활동</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u>교육인생이모작 사업</u>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u>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4조(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u>교육자원봉사활동</u>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u>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자원봉사 업무</u> 발굴지원 사업</li> <li>2. <u>퇴직교직원</u>의 평생교육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li> <li>3. <u>퇴직교직원</u> 연수 지원 사업</li> <li>4. 그 밖에 <u>교육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7조(자문기구)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u>교육인생이모작자문위원회</u>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p> <p>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u>관련단체</u>, <u>퇴직교직원 단체</u>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교육자원봉사활동</u> 발굴지원 사업</li> <li>2. <u>교육자원봉사자</u>의 평생교육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li> <li>3. <u>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u> 연수 지원 사업</li> <li>4. 그 밖에 <u>교육자원봉사활동</u>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7조(자문기구)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u>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u>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p> <p>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u>관련단체</u>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
2. 교육자원봉사자의 평생교육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조직) 교육감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

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자문기구)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